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함영미의원)

의안 번호	2369
----------	------

제출년월일 : 2013. 2. 25.

제 출 자 : 함영미·신성철·윤미라·
한갑수 의원 (4명)

□ 제정이유

- 최근 불산가스 누출사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취약계층 증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가도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 응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 및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시장은 응급상황시 적절하게 대응·대비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함.(안 제3조)

- 다. 시장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대상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안 제6조)
- 라. 시장은 심폐소생술을 위한 교육을 자동제세동기 설치시설의 관리자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
- 마.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

□ 예산수반사항 : 집행부와 협의

□ 기타 참고사항 : 없음.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
 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홍보
-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설치의무대상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
- 설치권장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및 관리자, 공무원, 초중고등학생, 민방위 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369
------------	------

제출년월일 : 2013년 3월 7일
제 출 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률의 위임사무이기보다는 지자체가 권고적, 보충적 사무로서 응급의료에 관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상위법령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자 수정함.

2. 주요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안 제1조)
- 민방위, 예비군의 용어를 명확히 표시함.(안 제7조)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 제7조 중 “민방위 예비군”을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으로 한다.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p>
<p>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및 관리자, 공무원, 초중고등학생, <u>민방위 예비군</u>,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 민방위 대원, 항토 예비군, ──────────</p>